



제 417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■ 홍기원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2226호)

2024. 8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박재유

목 차

I. 홍기원의원 대표발의(제2202226호)	1
1. 제안경위	1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3. 검토의견	2
가.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마련 시 화재, 침수 등으로부터 안전, 피난 관련 사항 고려(안 제53조의2)	2

I. 홍기원의원 대표발의(제2202226호)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홍기원의원 등 10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7. 25.

다. 회 부 일 : 2024. 7. 26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, 반복되는 호우로 인한 침수,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이 오히려 구조 및 탈출을 곤란하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,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,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(안 제53조의2제1항후단 신설).

3. 검토의견

가.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마련 시 화재, 침수 등으로부터 안전, 피난 관련 사항 고려(안 제53조의2)

현행	개정안
제53조의2(건축물의 범죄예방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 ② (생략)	제53조의2(건축물의 범죄예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범죄예방 기준은 화재,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,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
현행법 제53조의2제1항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및 건축설비 등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(「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」)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침수 및 화재 등의 발생 시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이 구조 및 탈출을 곤란하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건축물 및 건축설비 등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 화재 및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,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, 건축물 이용자 및 거주자

의 재난 안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.

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 화재 및 침수 등의 재난 발생 시 이용자 및 거주자의 피해 경감 및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,

현재 「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」(행정안전부고시) 제17조¹⁾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상황 발생 시 탈출이 쉽도록 개폐가 가능한 방법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
「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」(국토교통부고시) 제10조제13항 및 제11조제11호²⁾에서 공동주택 등의 세대 창문에 방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도록

1) 「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」

제17조(대피로 확보) 지하공간은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조명을 갖춘 대피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지하공간의 조명과 대피로의 폭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, 대피경로는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.
2. 지하공간 침수상황 발생 시 탈출이 쉽도록 개폐가 가능한 방법창, 실내 비상탈출 사다리 등의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, 침수 시 출입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.

2) 「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」

제10조(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) ① ~ ⑫ (생략)

⑬ 세대 창문에 방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

제11조(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,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)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(100세대 미만) 및 오피스텔은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10. (생략)
11. 세대 창문에 방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 (이하 생략)

권장하고 있으며,

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「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」를 2024년 내에 개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585